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5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박은정 · 김재원 · 정춘생
이해민 · 김승원 · 김준형
김영환 · 서왕진 · 전용기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형의 감면) 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
3. 범인 검거를 위한 체포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0조(형의 감면) 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u>1.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u> <u>2.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u> <u>3.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u> <u>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